고성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522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8. 12. 24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12. 11 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1998. 12. 12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8. 12. 21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신 · 구 공설운동장의 시설 및 규모가 서로달라 현행 조례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운동장 관리기준에 맞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○ 신 · 구 공설운동장의 기본사용료를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○ 신공설운동장이 설치되므로서 현행조례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운동장 관리기준 및 타시군 사용료와 형평성이 맞지않아 시설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조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○ 문 : 사용료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요인은 없는지

● 답 : 타시군 형평성에 맞게 적용하였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 : 1998. 12. 2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